

[4단계 BK21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]  
학술강연회(세미나)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

(2020년 11월 일 제정)

**제 1조 (목적)**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가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 (지원 원칙)**

- ① 사업단명으로 개최하는 것만 지원하며, 개최 3주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교내에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액은 신청서를 검토,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.
- ③ 개최 후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 3조 (구비서류)**

- ① 학술강연회 개최지원 신청서 (별지 서식 1)
- ② 초록
- ③ 세미나 공고문 (별지 서식 2)
- ④ 학술강연회 개최결과 보고서 (별지 서식 3)
- ⑤ 영수증 (별지 서식 4)
- ⑥ 연자 신분증사본(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)과 통장사본

참조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 기준

**<별표 12> 회의수당·원고료·강사료·자문료 정액표**

(단위 : 원)

구 분	회의수당 (1회/3시간이내)	원고료 (A4 1장당)	강사료 (1시간 당)	자문료 등 (1시간 당)
연구책임자 (전임교원 이상)	200,000 이하	50,000 이하	<u>1,000,000 이하</u>	150,000 이하
연구원 (책임급 이하)	200,000 이하	50,000 이하	<u>800,000 이하</u>	100,000 이하